
I. 테마진단

◆ 일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이상우 수석연구원

1. 검토 배경

우리나라보다 먼저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경험하고 제도를 개선해 온 일본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교육 강화배경, 교육관련 규정, 그리고 교육의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가시화, 저금리·저성장 기조는 DC형 퇴직연금중심으로 시장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난 2014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중 DC형 퇴직연금 규제완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은 DC형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¹⁾

○ 또한 DC형 퇴직연금의 추가납입허용,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300만 원 한도)은 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증대로 이어지는 상황임.

■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스스로가 투자상품을 적절히 선택하고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는 실정임.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규제 완화조치 등은 투자상품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근

1) 정부가 도입예정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가입자 스스로 투자상품의 선택 및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규모 확대가 예상됨.

로자의 운용 선택폭을 확대시킬 수 있지만 자칫 운용에 따른 리스크 증대로 손실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양한 투자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신의 니즈에 부합한 운용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투자지식 향상은 필수적임.

■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가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가입자 교육체계 또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함.

- 금융감독원 실태조사(2012년)결과, 가입 근로자의 약 35%가 가입자 교육을 경험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가입자 교육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반해 일본은 DC형 퇴직연금시장중심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2011년 이후 가입자 교육²⁾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한편, 실질적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함.

- 즉, 가입자 교육을 통한 투자활성화(실적배당형상품투자), 가입자의 투자인식 제고,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인해 가입자 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재인식함.

■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문제를 일찍이 경험한 일본의 가입자 교육 사례 및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일본의 가입자 교육 강화 배경, 가입자 교육 관련규정, 가입자 교육의 특징 등을 살펴 봄.

2) 일본은 '투자교육'이라고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입자교육'으로 용어를 통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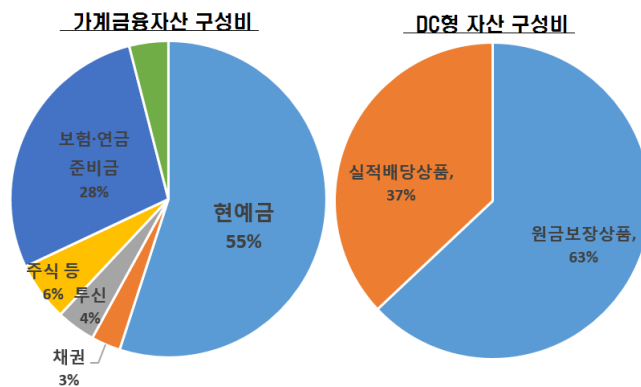
2. 가입자 교육 강화 배경

교육 강화 배경은 일본 아베정부의 가입자 교육 강화를 통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활성화 정책 추진,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이해부족,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에 따라 투자상품 특성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퇴직연금 지식 강화가 필요하게 됨.

가. 가입자 교육을 통한 투자 활성화

- 일본은 원금보장자산 선호 성향을 개선하여 가계자산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강화와 자산운용 활성화 등이 포함된 정책을 추진함.

〈그림 1〉 일본 가계자산 및 DC형 가입자 자산 구성비



자료: 日本銀行(2011. 3); 厚生労働省(2011. 3).

- 특히, DC형 가입자의 원금보장상품 편중은 수익률의 저하로 이어져 DB형 등 다른 퇴직급여제도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이에 따라 일본은 가입자 교육 제고가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투자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가입자의 투자 활성화 유도차원에서 가입자 교육 강화를 추진함.
- 일본 후생노동성(2010)은 DC형제도 적립금 운용을 원금보장상품으로만 운용한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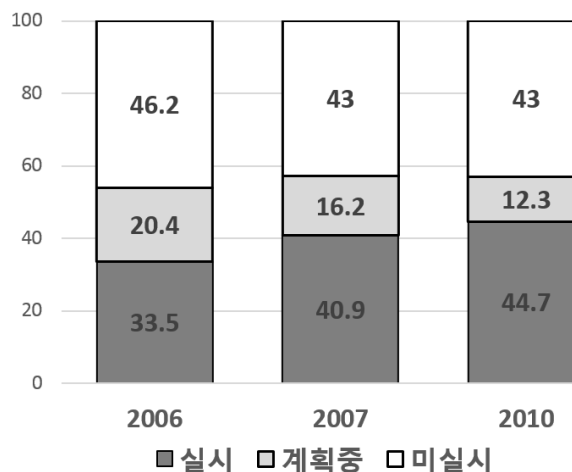
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원금보장상품의 운용비율이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교육의 필요성을 재인식함.

나. DC형 가입자의 투자이해도 제고

■ DC형제도³⁾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제도 이해도와 자산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게 됨.

- DC형제도 실태조사 결과, 가입자 중 약 29.5%가 DC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고, 현재 어떠한 운용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가입자비중이 약 44%에 이름.
- 또한 가입자가 DC형제도 가입을 후회하는 이유 중 DC형제도 이해도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등 제도 및 자산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DC형제도에 대한 가입자 이해 부족으로 상당수 기업은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 방법을 암묵적으로 제안하는 사례도 나타남.

〈그림 2〉 일본기업의 DC형제도 계속교육추이(%)



자료: 企業年金連合會(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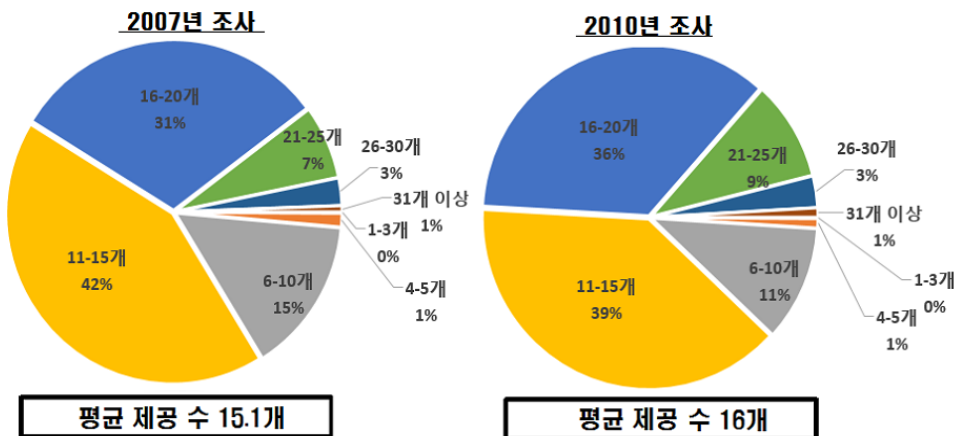
3) 일본의 확정각출형 연금제도를 우리나라 용어인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변경하여 표기함.

- 특히 DC형제도 가입자 실태조사 결과(2010), 지속적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약 43%로 나타나 가입자 교육의 미흡이 투자 인식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원인은 연금규약상에 계속교육 실시대상을 교육 희망자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임.

다. 운용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상품의 다양화

- 운용규제 완화 등으로 DC형제도 가입자의 운용상품 니즈가 보다 다양화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투자상품(운용상품)의 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DC형 가입기업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7년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운용상품 수는 평균 15.1개에서 2010년 16개로 증가함.

〈그림 3〉 일본 DC형 가입기업의 투자상품 제공 수



자료: 企業年金連合會(2007, 12~2010, 12), 『確定拠出年金に関する實態調査 調査結果』.

- 또한, 사전에 정해진 자산배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운영되는 디폴트펀드에 대한 니즈와 상품 종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다양한 투자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가입자 교육의 제고가 더욱 필요하게 됨.

3. 가입자 교육 관련 규정

2013년 4월에 개정된 확정각출연금법은 사업주에게 가입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초지식 함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과 배려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법령 및 자율규제로 규율하고 있음.

가. 법률개정

- 일본은 사업주의 가입자 교육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1년 8월에 제정된 연금확보지원법⁴⁾에 의해 확정각출연금법을 개정함.
- 기존의 확정각출연금법에 계속적인 가입자 교육 실시와 함께 배려의무를 규정하여 DC형 가입자의 자산운용 지식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운용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즉, 2011년 법률 개정을 통해 계속교육에 대하여 사업주의 배려의무를 명문화함.

〈표 1〉 연금확보지원법상 확정기여형 연금관련 개정 내용

개정 내용		시행일
DC형 연금	사업주의 근로자 계속적 가입자 교육 실시의무 명문화	2011. 8. 10
	종업원 매칭각출 허용 및 소득공제 적용	2012. 1. 1
	가입 연령 상향조정(60세에서 65세)	2014. 1. 1
	중도탈퇴요건 완화	
	자동이관자를 70세 시점에 강제 제정	

자료: JP Actuary Consulting(2011, 8).

- 또한 ‘저축에서 투자로’를 강조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일본 재생전략(2012. 7)’의 일환으로 2013년 4월 확정각출연금법의 일부를 개정하기에 이룸.
- 디폴트운용상품 등 투자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투자관련 정보제공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4) 공적연금 개혁 및 퇴직연금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공·사연금개혁관련법.

- 디폴트 운용상품 설정 시 연금규약에서 디폴트 운용상품을 설정한 목적, 수동으로 운용지시가 불가능하다는 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
- 또한 가입자에게 매칭 기여를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기여한도액과 그 효과, DC형제도를 포함한 노후설계의 필요성과 운용리스크별 자산배분 예시를 하도록 함.

나. 법적 근거

1) 확정각출연금법 및 시행령

■ 가입자 교육은 확정각출연금법 제22조에 사업주의 노력의무와 배려의무로서 규정되어 있음.

- 확정각출연금법 제22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가입자 교육 내용과 유사하지만 가입자 투자교육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충실의무와 주의의무에 입각한 가입자 교육의 노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표 2〉 확정각출연금법상 가입자 교육관련 규정

구분	확정각출연금법 제22조 제1항	확정각출연금법 제22조 제2항
규정	사업주는 기업형연금의 가입자 등에 대해, 이들의 운용지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산운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법22조 1항의 조치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업형연금가입자 등의 자산운용에 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운용지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의무	노력의무	배려의무

- 특히 확정각출연금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가입자의 운용지식 향상을 위해 제도 도입 후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에 대해 배려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처럼 확정각출연금법에는 가입자 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확정각출연금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즉 확정각출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교육 및 컨설팅 업무는 운영관리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가입자 교육을 사업자에 위탁하여 실시함.

〈표 3〉 확정각출연금법 시행령상 가입자 교육관련 규정

구분	운영업무위탁	관련 규정
시행령	사업주는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

2) 하위 규정(법령해석 통지)

■ 구체적인 가입자 교육 사항은 후생노동성의 법령해석통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과 지도의무를 부과함.

○ 가입자교육에 대한 법률과 하위 법규에 대한 법령해석⁵⁾을 2005년 제정·공포함.
○ 법령해석에서는 확정각출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해석과 이에 근거한 세부적인 가입자 교육 내용을 제시함.

■ 일본 DC형제도의 가입자 교육 제공방법 등은 사실상 후생노동성의 승인이 요구됨.

○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가입자 교육 제공 방법 등이 연금규약의 기재사항이며, 법률 제3조는 노사합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연금규약을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연금규약에 기재되는 가입자 교육은 후생노동성의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가입자 교육의 기본 취지, 가입자 교육 주요 내용, 제공방법 등이 연금규약에서 기재가 요구됨.

5) 정식 명칭은 ‘確定拠出年金法並びにこれに基づく政令及び省令について(法令解釈)’임.

가) 가입자 교육 방향성

■ 법령해석 제2조 제1항에서는 DC형제도가 적절히 운영·정착되고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연금제도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입자가 적절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와 지식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DC형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와 그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는 운영관리기관 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입자 교육에 대한 매우 무거운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제도 가입은 물론 가입 후에도 개별 가입자 등의 지식수준과 요구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입자교육 실시를 하여야 함.

■ 또한 법령해석 제2조에서는 DC형제도의 운용지시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자산배분과 운용수익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입자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사업주 등은 가입자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가입자의 지식수준과 학습능력 등을 감안하여 내용, 시간, 제공방법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제도가입 후 교육은 가입 시 기본사항을 학습하지 못한 자의 재교육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적은 가입자에게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금융상품의 특징 및 운용 등에 대해서도 운용실적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가입자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함.

○ 가입자 교육은 최초교육과 계속교육의 특성 차이에 유의하여, 실시목적을 명확히 하되 계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함.

나) 가입자 교육 내용

■ 가입자 교육내용은 연금제도 개요, 확정기여형 연금 내용, 금융상품 구조 및 특징, 자산운용 기본지식, 노후설계 필요성 등으로 구분됨(〈표 4〉참조).

○ 일본 연금제도의 개요·개정 등의 동향, 전체 연금제도에서 DC형제도가 의미하는 점을 교육하도록 명시함.

〈표 4〉 가입자 교육관련 규정(법령해석 통지)

구분	세부 내용
연금제도의 개요	• 전체 연금체계 및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의미 등
확정기여형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	•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자와 기여 한도액 • 운용상품의 범위, 가입자 등에게 운용상품을 제시하는 방법 및 운용상품의 변경 • 급여 종류, 수급요건, 급여의 개시시기 및 급여의 수령방법 • 가입자가 전직 또는 이직했을 경우 자산의 이전 방법 • 부담금 납입, 운용 및 퇴직급여의 각 단계별 세제 조치 내용 • 사용자,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역할 • 사용자,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행위 준칙 내용(책무 및 금지행위)
금융상품 구조와 특징	• 예·적금, 신탁상품, 투자신탁, 채권, 주식, 보험상품 등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다음 사항 - 성격 또는 특징, 종류,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예상되는 리스크 - 투자신탁, 채권,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나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
자산운용 기초지식	• 자산운용 시 유의점(즉, 금융상품의 구조나 특징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리스크의 종류와 내용(금리리스크, 환율리스크, 신용리스크, 가격변동리스크, 인플레이 리스크 등) • 리스크와 리턴의 관계 • 장기운용의 방식과 효과, 분산투자의 방식과 효과 등
노후설계 필요성	• DC형제도를 포함한 노후생활설계의 필요성 명시 - 재직기간 중 재산형성의 필요성, 장기적인 노후대비 필요성 -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총액 예시 및 부족한 노후비용추정 - 재직기간 중 생활설계를 감안하여 노후자산형성계획 - 운용리스크에 따른 자산배분 예시 등
기타사항	•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동향 • 다른 퇴직급여제도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자기자신의 노후대책에서 DC형의 위치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서는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자와 기여한도액, 운용상품의 범위, 가입자 등에게 운용상품을 제시하는 방법, 급여의 수령방법, 수탁기관의 역할 등을 교육하도록 명시함.

- 예·적금, 신탁상품, 투자신탁, 채권, 주식, 보험상품 등 금융상품 구조와 특징에서는 상품 성격, 종류, 기대 수익률, 예상되는 리스크, 투자신탁·채권·주식 등 유가증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교육함.

- 자산운용 기초지식에서는 자산운용 시 유의점, 리스크 종류와 내용(금리리스크, 환율리스크, 신용리스크, 가격변동 리스크, 인플레이 리스크 등), 리스크와 리턴 관계, 장기운용 방식과 효과, 분산투자 방식과 효과 등을 교육함.

■ 특히 DC형제도를 포함한 노후생활 설계 필요성과 공적연금제도 개혁 동향, 다른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교육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노후설계 필요성에서는 재직 중 재산형성 필요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대비 필요성,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총액 예시 및 부족한 노후자금 추정, 노후자산형성 계획 및 운영 등에 대해 교육함.
- 기타사항에서는 공적연금제도 개혁 동향, 다른 퇴직급여제도 등에 관한 정보제공, 자기 자신의 노후대책에서 DC형의 위치 등을 교육함.

다) 가입자교육 제공방법

■ 사업주는 자료, VTR, DVD, 설명회의 개최를 통해 가입자 등에게 가입자 교육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입자별 자산운용 관련 지식 및 경험에 맞추어 최적 교육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 사업주 등은 가입자가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실시할 책무가 있고 가입자로부터 자산운용에 대한 질문이나 조희가 있을 경우 콜센터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규정함.
- 계속교육의 경우 특별한 주제를 정하여 사내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제공을 하고 기존 직원의 사원연수 중에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4. 가입자 교육 특징

일본 기업연금연합회가 작성한 가입자교육 핸드북(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후생노동성의 법령 유권해석, 가입자 교육의 방법과 범위, 기업의 가입자교육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교육 전문가(DC planner 등)를 양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 실시 후 가입자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기업의 특성별 가입자 교육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기업에 전파하고 있음.

- 자산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추세에 따라 가입자 투자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자 교육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 교육의 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함.
- 가입자 교육 특징으로는 가입자 투자지식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수행, 실질적인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투자가이드라인 설정 및 가입자 교육모범사례 발굴, 가입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들 수 있음.

가. 가입자 투자지식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실시

- 확정기여형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자기 책임하에 운용지시를 하고 운용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투자지식 향상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운용규제 완화로 디폴트옵션상품, 라이프사이클 펀드상품 등과 같은 다양한 운용상품이 개발되고 있어 이들 상품에 대한 운용방법 교육 등이 중요하게 됨.
- 따라서 일본은 DC형제도 도입 시 가입자 교육 이외에 가입자의 투자지식 이해도 향상을 위해 계속교육 중심으로 가입자 교육의 패턴을 변화시킴(〈표 5〉 참조).
 - 제도 도입 시 한 번의 가입자 교육보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표 5〉 DC형 가입자의 계속교육 방향

구분	세부 내용(요약)
교육내용	• 법령상에 예시된 교육사항 재교육 원칙 • 연금제도 전반 및 은퇴설계 추가 •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한 내용(자산운용 등): 선별 교육
교육방식	• 집합교육 또는 가입자별 차등교육(필요 시) • 테마별 교육 등을 지향
교육시기	• 제도도입 후 시기설정(연단위 등): 회사규모별 고려
참가형식	• 업무시간 외에도 실시 검토 • 휴일개회, 부부참가 방법 병행
사후조치	• 모니터링 및 앙케이트조사(이해도 조사)

■ 기업연금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가입자 교육의 내용 및 시기, 교육방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 방향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특히 기업연금연합회는 가입자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 유의할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가입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⁶⁾

○ 또한 일본은 가입자 교육 등을 통해 노후설계 및 연금제도 이해, 금융상품의 구성과 특징, 자산운용 기초지식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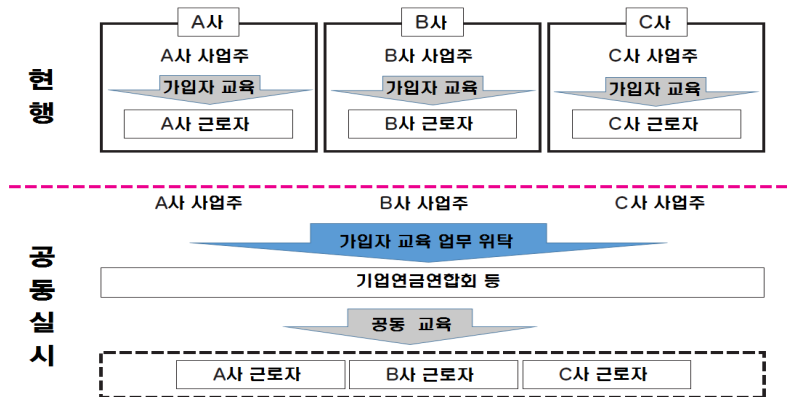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자산관리방법, 노후대책관련 내용 등이 없어 가입자교육내용이 매우 제한적인 것과 대조적임.

나. 교육전문기관 등을 통한 가입자 교육의 질 제고

■ 일본은 소규모 확정기여형 가입기업 근로자들의 투자지식 제고차원에서 기업연금연합회 등을 통해 가입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4〉 참조).

6) 企業年金連合会(2015. 1).

〈그림 4〉 교육 전문기관(기업연금연합회)에 의한 가입자 교육



자료: 第12回 社會保障審議會企業年金部會(2014, 11).

■ 또한 일본은 DC Planner 및 DC Advisor 등 교육 자격자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자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입자 교육의 질을 제고함.

○ 가입자가 정확하게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고 다양한 운용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교육의 전문가를 통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자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임.

○ 실제 일본의 퇴직연금 교육현장에서는 DC Planner 및 DC Advisor 등 전문자격 유무를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짐.

- 이 자격은 법적 구속력은 지니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다. 가입자 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 확정각출연금법 등에 규정된 가입자 교육내용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가입자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따르도록 권고함.

○ 가입자 교육이 알찬 내용으로 근로자 니즈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가입자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DC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입자 교육 가이드라인을 설정함.

○ 특히, 대부분의 가입자 교육 문제가 상당부분,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형 확정각출형연금 투자교육 핸드북 등을 통해 가입자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투자교육 핸드북에 가입자교육사항의 가이드라인(세부지침)을 제시하여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함.⁷⁾

■ 또한 후생노동성의 확정각출연금연락회의 등에서 모범적인 가입자 교육사례를 발굴·제공하고 있으며 신문 등 각종 언론에서도 확정기여형 연금 우수교육 사례를 발굴·소개함.

○ 가입자 교육의 모범사례 중의 하나인 이온사는 DC 트레이너를 양성해 기업들이 DC형제도 도입 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CSK그룹은 강의교육보다 게임형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5. 시사점

■ 일본은 2002년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자 교육을 법령에 규정하였음에도 가입자 교육 실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 가입 시 교육 실시율은 높으나 계속교육의 실시율은 점점 낮아져 가입자들의 자산운용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중현상과 근로자의 투자지식 이해도 부족, 가입자 교육의 양극화, 무관심층의 대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이런 상황에서 연금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 가입자 교육의 환경변화는 가입자의 투자지식 이해도를 향상시켜 적절히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입자 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 이에 일본은 가입자 교육 관련 법률을 적극 개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실질적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함.

7) 第12回社会保障審議会企業年金部会(2014. 11).

- 우리나라도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으로 DC형 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가입자 선택폭이 넓어지고 투자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사례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입자 교육 검토가 요구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에 가입자 교육의 범위를 퇴직연금중심으로 한정하지 않고 연금제도 이해, 노후설계 등으로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제도 도입 시 일시적인 가입자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가입자의 투자지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가입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 가입자교육 가이드라인(교육지침)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자 교육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어느 수준으로, 어느 내용으로 가입자 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 등이 제시되지 않아 형식적인 가입자 교육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 일본처럼 가입자 교육의 모범사례를 상시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가입자 교육의 질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투자지식이 부족한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가입자 교육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가입자 교육 실시가 요구됨.
 - 또한, 가입자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본의 DC Planner 및 DC Advisor 등과 같은 가입자 교육 전문자격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참 고 문 헌〉

강창희(2015. 2), 「DC형 퇴직연금시장의 확대와 연금·투자교육」,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통권 165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4. 20), “퇴직연금설문조사결과 및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

김성일(2015. 10),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개선 방안”, 한국연금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및 좌담회 자료.

조혜진(2011. 5), 「퇴직연금제도가가입자교육을 활용한 근로자 금융교육 방안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4권 2호.

岡本裕介(2015. 9), 確定拠出年金法等改正: 年金制度の一層の拡充に向けて, 資本市場研究会.

国民年金及び企業年金等による高齢期における所得の確保を支援するための国民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1年 法律 第93号.

企業年金連合会(2010), 『確定拠出年金に関する実態調査 調査結果』.

_____ (2014), 確定拠出年金(制度)に関する実態調査.

_____ (2015. 1), 確定拠出年金制度運営ハンドブック.

NPO確定拠出年金総合研究所(2014), 確定拠出年金企業担当者意識調査.

野村資本市場研究所(2015. 11), 衆議院を通過した確定拠出年金法改正法案~運用改善の鍵を握る「指定運用方法」の基準策定: 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日本銀行(2011. 3), 資金循環統計速報, 2011年第1四半期.

日本証券業協会(2014. 4), 社会保障審議会 企業年金部会関係団体ヒアリング説明資料.

第12回社会保障審議会企業年金部会(2014. 11), 確定拠出年金における運用について.

JP Actuary Consulting(2011. 8), 年金確保支援法の解説.

確定拠出年金法並びにこれに基づく政令及び省令について(法令解釈).

厚生労働省(2011. 3), 「確定拠出年金における運用について」.

厚生労働省(<http://www.mhlw.go.jp/>).